

## 1. 대한LPG협회

### 1. 추진배경

- 대한LPG협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### 2. 사업내용

- 지원규모: 1,040백만 원(200만 원 × 260명 × 2회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 - \* 전공대학, 대학원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은 제외
  - \*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공고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(졸업학기자 제외)
  - \* 전문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
- 신청자격: 택시(법인 및 개인) 기사 가정의 대학생(자녀)
  - \* 푸른등대 기부장학금(대한LPG협회)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, 택시운전 경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 - \*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260명
  - \* 학제의 경우 신청 인원에 따라 선발비율을 정하며, 법인/개인 택시는 1:1의 비율로 선발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19년 1학기 ~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 - 동점자 처리기준: 소득구간\*(분위) > 다자녀(세자녀 이상)가정 > 성적상위자 > 연장자 \* 소득구간(분위)이 낮은 자

## 2. 한국투자공사

### 1. 추진배경

- 한국투자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### 2. 사업내용

- 지원규모: 30백만 원(250만 원 × 6명 × 2회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
  - \* 전공대학, 대학원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은 제외
  - \* 전문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
- 신청자격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,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외 보호 출신자
  - \*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 제출
-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\*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(신입생 선발)
  -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6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19년 1학기 ~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70점) + 자기소개서\*(30점) \* 한국투자공사 관계자 심사
  - 동점자 처리 기준: 소득구간\*(분위) > 연장자
  - \* 소득구간(분위)이 낮은 자

### 3. 가수 홍진영

#### 1. 추진배경

- 기부자인 **홍진영(가수)**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#### 2. 사업내용

- 지원규모: 100백만 원(250만 원 × 20명 × 2회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**
  - \* 전공대학, 대학원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은 제외
  - \*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(졸업학기자 제외)
  - \* 전문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
- 신청자격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**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** 이수
  - \*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19년 1학기 ~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70점)+성적(30점)
  - 동점자 처리 기준: 소득구간\*(분위) > 성적상위자 > 연장자
  - \* 소득구간(분위)이 낮은 자

## 4. 한국공항공사

### 1. 추진배경

- 한국공항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 사업 추진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소음피해 지역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### 2. 사업내용

- 지원규모: 418백만 원(100만 원 × 209명 × 2회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 - \* 전공대학, 대학원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은 제외
  - \*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공고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(졸업학기자 제외)
  - \* 전문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
- 신청자격: 소음대책지역(서울-양천구·구로구·강서구, 경기-부천시·김포시·광명시, 인천-계양구 내 소음대책지역)거주 대학생
  - \*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([www.airportnoise.kr](http://www.airportnoise.kr))에서 확인
  - \* 한국공항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 - \*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 미적용, 계속장학생 동일적용
- 지원내용: 학기당 1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인원: 209명

지 역	서울시			경기도			인천시	합계
	양천구	구로구	강서구	부천시	김포시	광명시	계양구	
선발인원(명)	127	35	1	26	17	1	2	209
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19년 1학기 ~ 2학기)

□ 평가기준: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(100점)

○ 거주기간 배점기준

대 상	배점구분	내 용	점 수
대 학생 (위탁시행)	거주기간 (100)	20년이상	100
		18년이상~20년미만	90
		16년이상~18년미만	80
		14년이상~16년미만	70
		12년이상~14년미만	60
		10년이상~12년미만	50
		8년이상~10년미만	40
		6년이상~8년미만	30
		4년이상~6년미만	20
		2년이상~4년미만	10
		2년미만	0

\* 최근 거주기간은 본인(학생)의 현재 주민등록주소 상 거주지의 거주기간 (단, 현거주지 직전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)

○ 동점자 처리기준: 거주기간 > 성적상위자 > 소득구간\*(분위) > 연장자

\* 소득구간(분위)이 낮은 자

- 참고 1. 장학생 선발 소득·성적 배점표  
 2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 
 3. 소득확인 제출서류  
 4.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 
 5.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양식

##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·성적 배점표

### □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
#### 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소득분위	0~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~10분위
점수	60	54	48	42	36	30	24	18	12

#### 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#### [평가 점수표]

성비 점율	상위 5%미만	5%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이상 25%미만	25%이상 30%미만	30%이상 35%미만	35%이상 40%미만	40%이상 45%미만	45%이상 50%미만
점수	40	38	36	34	32	30	28	26	24	22
성비 점율	50%이상 55%미만	55%이상 60%미만	60%이상 65%미만	65%이상 70%미만	70%이상 75%미만	75%이상 80%미만	80%이상 85%미만	85%이상 90%미만	90%이상 95%미만	95%이상
점수	20	18	16	14	12	10	8	6	4	2

### □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
#### 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소득분위	0~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~10분위
점수	50	45	40	35	30	25	20	15	10

#### 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#### [평가 점수표]

성비 점율	상위 5%미만	5%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이상 25%미만	25%이상 30%미만	30%이상 35%미만	35%이상 40%미만	40%이상 45%미만	45%이상 50%미만
점수	50	47.5	45	42.5	40	37.5	35	32.5	30	27.5
성비 점율	50%이상 55%미만	55%이상 60%미만	60%이상 65%미만	65%이상 70%미만	70%이상 75%미만	75%이상 80%미만	80%이상 85%미만	85%이상 90%미만	90%이상 95%미만	95%이상
점수	25	22.5	20	17.5	15	12.5	10	7.5	5	2.5

□ 가계소득(30점) + 성적(7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소득분위	0~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~10분위
점수	30	27	24	21	18	15	12	9	6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성비 점율	상위 5%미만	5%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이상 25%미만	25%이상 30%미만	30%이상 35%미만	35%이상 40%미만	40%이상 45%미만	45%이상 50%미만
점수	70	66.5	63	59.5	56	52.5	49	45.5	42	38.5
성비 점율	50%이상 55%미만	55%이상 60%미만	60%이상 65%미만	65%이상 70%미만	70%이상 75%미만	75%이상 80%미만	80%이상 85%미만	85%이상 90%미만	90%이상 95%미만	95%이상
점수	35	31.5	28	24.5	21	17.5	14	10.5	7	3.5

□ 가계소득(70점) + 성적(3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소득분위	0~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~10분위
점수	70	63	56	49	42	35	28	21	14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성비 점율	상위 5%미만	5%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이상 25%미만	25%이상 30%미만	30%이상 35%미만	35%이상 40%미만	40%이상 45%미만	45%이상 50%미만
점수	30	28.5	27	25.5	24	22.5	21	19.5	18	16.5
성비 점율	50%이상 55%미만	55%이상 60%미만	60%이상 65%미만	65%이상 70%미만	70%이상 75%미만	75%이상 80%미만	80%이상 85%미만	85%이상 90%미만	90%이상 95%미만	95%이상
점수	15	13.5	12	10.5	9	7.5	6	4.5	3	1.5

□ 가계소득(10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소득분위	0~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~10분위
점수	100	90	80	70	60	50	40	30	20

**참고 2**

**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**

구 분	종 류
학자금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,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</li> <li>■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학자금 대출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 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</li> </ul>
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)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인문100년장학금, 예술체육비전장학금, 대학원생지원장학금(인문사회계)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장학금)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</li> <li>■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장학금 예) 교내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○○인재육성재단 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</li> </ul>
중복지원 예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,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,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(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)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</li> <li>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</li> <li>③ ①,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</li> </ol>

\* '19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**참고 3**

**소득확인 제출서류**

**【(대법원·행정정보공동이용)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】**

구분	부	모	제출서류	추가서류	비고
미혼	생존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<sup>주1)</sup>		
	생존	이혼 후 관계 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)+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	
	생존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)		
	생존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	
	생존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
	이혼 후 관계 단절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+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	
	이혼 후 관계 단절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폐쇄 인정 <sup>주5)</sup>
	이혼 후 관계 단절	이혼 후 관계 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
	이혼 후 관계 단절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 + 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
	이혼 후 관계 단절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 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
	사망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	
	사망	이혼 후 관계 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폐쇄 인정 <sup>주5)</sup>
	사망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	
	사망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	폐쇄 인정 <sup>주5)</sup>
	사망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폐쇄 인정 <sup>주5)</sup>
	재외국민·외국인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
	재외국민·외국인	이혼 후 관계 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 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
	재외국민·외국인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폐쇄 인정 <sup>주5)</sup>
	재외국민·외국인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
	재외국민·외국인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
실종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		
실종	이혼 후 관계 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 + 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주민등록초본 <sup>주7)</sup>		
실종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	폐쇄 인정 <sup>주5)</sup>	
실종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		
실종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등 서류 <sup>주2)</sup>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	
기혼	배우자 생존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<sup>주1)</sup>		
	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		혼인관계증명서(학생)+주민등록등본 <sup>주4)</sup>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<sup>주6)</sup>		
	배우자 사망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<sup>주8)</sup>		
	배우자 실종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<sup>주2)</sup>		
	배우자가 재외국민·외국인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<sup>주3)</sup>	

※ 서류 확인 시, ‘학자금 신청일’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  
 ※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‘(필수서류)완료’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
 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‘민원24’(minwon.go.kr), 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출력 가능  
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  
 ※ ‘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
 - ‘전호주와의 관계’ 및 ‘호주승계사유’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

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  
 주2) 실종 등 서류: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신고 신고증(법원), 군복무확인서(군부대), 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원), 거주불명자등(초)본  
 주3)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, ① 재외국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외국인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원, 여권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포함))  
 주4) 주민등록등본: ‘학생 단독세대주’ 또는 ‘가구원과 동일세대’ 여부 확인필요  
 주5) 폐쇄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‘폐쇄’가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  
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·확인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)  
 주7) 주민등록초본: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합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  
 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
**참고 4**

**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**

기부처	제출서류	
대한LPG협회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법인택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부모)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li>※ 택시기사경력(1년 이상)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</li> </ul> </li> <li>● 개인택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부모)사업자등록증</li> <li>※ 택시기사경력(1년 이상)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</li> </ul> </li> </ul>
한국투자공사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기소개서(참고5)</li> <li>●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(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: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</li> <li>- 가정위탁: 가정위탁보호확인서</li> </ul> </li> </ul>
한국공항공사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주민등록초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, 주민번호 뒷번호(7자리) 미포함, 1개월 이내 발급서류</li> </ul> </li> </ul>

- ※ 기부처별 추가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
- ※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직접작성, 제출 서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형태로 업로드

**참고 5**    **기부처별 자기소개서 양식**

[한국투자공사 자기소개서 양식]

**자기소개서**

성명			
대학명			
학부/전공			
학년		학번	

※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(자율 분량. 단, 각 항목당 2,000자 이내)

**1. 자기소개 (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)**

- 자율적인 내용 및 형식으로 서술

**2. 향후 진로 및 비전**

- 자율적인 내용 및 형식으로 서술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2019년    월    일

성명 :

한국장학재단 귀중